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7. 21(목) 10:00

제23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환경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00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2. 7. 13.
- 라. 회부일자 : 2022. 7. 13.

2.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10. 19.) 및 시행(2022. 4. 20.)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가맹점 등록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판매대행점’ 이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 (안 제2조, 제7조, 제8조)
- 나. 상품권의 발행방법 중 권면금액을 삭제함(안 제4조제4항)
- 다.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고, 구 금고 계정 운영이 불가할 경우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상위법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의2)
- 라. 상품권 발행방법 중 권면금액 삭제에 따라 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을 “구매건별 구매금액” 으로 함(안 제7조제4항)

- 마. 판매대행점의 위탁 사업에 따른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신설함(안 제7조제5항)
- 바.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 단위 외에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5호)
- 사. 등록이 취소된 업체의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3항)
- 아. 가맹점 등록 현황을 공개토록 함(안 제8조제4항)
- 자. 가맹점 등록취소 강행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제5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의2, 제7조, 제8조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의기관: 서울특별시와 합의함(신탁계약 체결 주체 관련)

5. 검토의견

가. 개정 이유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대행사 관련 규정과 상품권 권면금액의 삭제, ▶가맹점과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나. 주요 내용

- 1) ‘판매대행점’ 이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 (안 제2조, 제7조, 제8조)

⇒ 지역사랑상품권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정의에서 운영대행사를 삭제하고 판매대행점이 상품권의 발행, 유통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경함

2) 상품권의 발행방법 중 권면금액을 삭제함(안 제4조제4항)

⇒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구체적인 종류와 권면금액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법 제4조제4항)

그런데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하여 결제하는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 모바일결제에 취약한 계층의 불편함과 이로 인한 이용을 저하,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의 사각지대 발생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모바일결제에 취약한 노령층 등을 위해서는 지류나 카드 형태로 상품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국회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실물카드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¹⁾이 발의되었으므로 권면금액의 삭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3)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고, 구 금고 계정 운영이 불가할 경우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상위법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

⇒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상품권 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함

4) 상품권 발행방법 중 권면금액 삭제에 따라 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을 “구매건별 구매금액” 으로 함(안 제7조제4항)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41,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 5) 판매대행점의 위탁 사업에 따른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신설함(안 제7조제5항)
- 6)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 단위 외에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5호)
- 7) 등록이 취소된 업체의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3항)

⇒ 위법적인 가맹점 등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취소된 가맹점의 재등록 신청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개정되어 동일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 8) 가맹점 등록 현황을 공개토록 함(안 제8조제4항)
- 9) 가맹점 등록취소 강행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제5항)

다. 검토의견

○ 「지역사랑상품권법」의 주요 개정 사항

지역사랑상품권은 1999년부터 지역화폐, 고향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로 사용되어 오다가, 2018년 말부터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했고, 2020년 5월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상품권의 발행과 판매대행점, 가맹점의 등록과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이 법제화되었음.

-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개정(2021.10.19.)하여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방 금고에 별도 계정²⁾으로 관리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2) 당초에는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계좌'에 보관·관리토록 하였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목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기 위해

사전협의를 거쳐 신탁업자³⁾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음 (법 제4조의2).

또한, 상품권 운영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가맹점 등록 신청에 대한 간주 규정(법 제7조), ▶등록 취소된 가맹점의 재등록 제척 기간(법 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법 제15조) 등이 마련되었음.

- 본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품권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원활한 운용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다만, 권면금액의 삭제에 대해서는 향후 카드나 지류형태로 상품권이 발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것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관계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9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